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5021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588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502132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준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변론 종결 2022. 11. 24.

판결 선고 2023. 2. 2.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8.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62,635,5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635,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21. 8.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0. 11. 13.부터 2021. 2. 15.까지 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13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2021. 8. 19.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21년 제768호로 '원고는 2020. 11. 13. C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21. 11. 12.,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05. 8. 1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 8. 4.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호협1938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21.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고, 2021. 12. 1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와 C은 2009.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은 2021. 8. 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산 재산인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8. 5.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09. 9. 25. 채권최고액 148,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② 2018. 1. 30.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③ 2021. 7. 3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1. 4.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지분을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위 증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지분의 가액 205,000,000원에서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7,000,000원을 공제한 15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피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그 상당성 또한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분 이전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사해행위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또한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는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C이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8. 4. 피고와 C은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1. 11. 11.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이루어져 2021. 12. 13. 협의이혼신고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의 혼인 기간이 약 16년 정도인 점, 혼인 기간 중 피고와 C은 모두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각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있어 피고가 기여한 부분이 C이 기여한 것보다 월등히 크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와 C은 혼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분할대상 재산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는 등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와 C은 혼인기간 중 이룩한 공동재산 중 각 1/2 상당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62,635,50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2021. 12. 1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합계는 채무 5,582,356원(= 적극재산 205,000,000원 - 소극재산 210,582,356원),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합계는 채무 28,311,348원(= 적극재산 205,000,000원 -

233,311,348원)이다.1)

C	1	이 사건 지분	205,000,000	C	1	F에 대한 채무	47,000,000
				2	원고에 대한 채무	146,038,356 2)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3.부터 2021. 12.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C이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차용하여 개인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차용금은 C이 협의이혼 당시까지 현금이나 다른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금이 C과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불만한 증거가 없고, C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상당액을 적극재산으로 평가 가능한 현금 기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불만한 증거도	

C	1	이 사건 지분	205,000,000	C	1	F에 대한 채무	47,000,000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G카드 대출금 채무	1,138,0003) 원고는 18,956,000원으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2. 13.을 기준으로 위 액수만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카드 연체금액	16,406,0004) 원고는 18,719,000 원(원고가 그 상세 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갑 제4호증 1면의 카드 연체금액 2,313,000원과 2면의 2018. 7. 9. 발생 H카드 연체금액 9,441,000원 및 6,965,000원의 합산액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2,313,000원의 카드 연체금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계	210,582,356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205,000,000	피고	1	F에 대한 채무	47,000,000
			2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168,000,0005)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2022. 6. 17.자 준비서면, 2022. 9. 13.자 준비서면, 피고의 2022. 10. 19.자 준비서면, 2022. 10. 31.자 준비서면)		
			3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8,311,3486)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2022. 6. 17.자 준비서면, 2022. 9. 13.자 준비서면,		

C	1	이 사건 지분	205,000,000	C	1	F에 대한 채무	47,000,000
					피고의 2022. 10. 19.자 준비서면, 2022. 10. 31.자 준비서면)		
				합계	233,311,348		
합계	410,000,000(7) 피고는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가액 6,000,000원 상당의 2015년식 소나타 자동차와 현금 20,000,000원, I의 적극재산으로 현금 74,000,000원을 각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합계	443,893,704				

- 따라서 C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의 몫은 소극재산인 채무 16,946,852원 $\{= 5,582,356 + 28,311,348 \text{원} \times 1/2\}$ 이 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결과 피고는 기존 자신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이 74,000,000원 $[= \text{이 사건 지분 가액 } 205,000,000 \text{원} - \text{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 131,000,000 \text{원} (= (168,000,000 + 94,000,000) \times 1/2)]$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C에게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140,000,000원이 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의 몫을 초과하여 갖게 된 적극재산 62,635,504원 $(= 205,000,000 \text{원} - 233,311,348 \text{원} + 74,000,000 \text{원} - (-16,946,852 \text{원}))$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가 C에게 사업자금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상당성을 벗어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의 이체 내역이 피고와 C의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C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의사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재산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2. 1. 4. 해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수밖에 없다.

다) 한편, 2021. 12. 1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20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0,000,00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8,000,000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액은 74,000,000원($= 205,000,000\text{원} - 120,000,000\text{원} \times 1/2 - 48,000,000\text{원} \times 1/2 - 94,000,000\text{원} \times 1/2$)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74,000,000원 중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62,635,5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2,635,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영

별지

- 1) 원고와 피고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재산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2)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3.부터 2021. 12.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C이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차용하여 개인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차용금은 C이 협의이혼 당시까지 현금이나 다른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금이 C과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C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상당액을 적극재산으로 평가 가능한 현금 기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원고는 18,956,000원으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2. 13.을 기준으로 위

액수만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18,719,000원(원고가 그 상세 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갑 제4호증 1면의 카드 연체금액 2,313,000원과 2면의 2018. 7. 9. 발생 H카드 연체금액 9,441,000원 및 6,965,000원의 합산액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2,313,000원의 카드 연체금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2022. 6. 17.자 준비서면, 2022. 9. 13.자 준비서면, 피고의 2022. 10. 19.자 준비서면, 2022. 10. 31.자 준비서면)

6)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2022. 6. 17.자 준비서면, 2022. 9. 13.자 준비서면, 피고의 2022. 10. 19.자 준비서면, 2022. 10. 31.자 준비서면)

7) 피고는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가액 6,000,000원 상당의 2015년식 소나타 자동차와 현금 20,000,000원, I의 적극재산으로 현금 74,000,000원을 각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